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1 발의연월일: 2020. 6. 26.

발 의 자 : 김남국 · 양이원영 · 서영석

오영환 • 박주민 • 이수진

신정훈 · 민형배 · 임오경

이형석・황 희・진선미

홍익표 • 고민정 • 임호선

최강욱 • 정청래 • 최기상

서영교 · 서동용 · 최혜영

문진석 · 김경만 · 김용민

이용선 · 천준호 · 홍기원

윤준병ㆍ허 영ㆍ김철민

고영인 의원(31인)

제안이유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 또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하여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역시 투명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함.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또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있는 반면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바,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검사의 직무 중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인권보호 의무와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함(안 제4조제2항).
- 나.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 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28조의2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의 감찰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을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4조(검사의 직무) ① (생 략) | 제4조(검사의 직무) ① (현행과 | |
| | 같음) | |
|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 ② | |
|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 | |
| 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 <u>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u> | |
|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 |
| 아니 된다. |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 |
| | 야 하고 | |
| 제12조(검찰총장) ① (생 략) | 제12조(검찰총장) ① (현행과 같 | |
| | 승) | |
|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 | ② | |
| 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 | | |
| 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 | | |
| 을 지휘·감독한다. <u><단서 신</u> | 다만, 감찰에 관 | |
| <u>설></u> | 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 |
| |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 |
| | 검사"라 한다)의 감찰활동의 독 | |
| | 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 |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 | |
| 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u>감</u> | 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u>감</u> | |
| 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 | 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 |
| 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 | |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 검 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 격자를 임용한다.

② ~ ⑤ (생 략) <u><신 설></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 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